

근대 한국의 주권 개념

신 율 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론 | 개념의 도입과 사용 | 관념의 수용과 변용 | 결론과 현대적 의미

1. 서론

이른바 탈근대로의 역사적 전환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주권(sovereignty)은 학문적인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 모두에서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¹ 근대정치의 개념 중에서 주권만큼이나 포괄적인 동시에 다의적인 것도 아마 없을 것이다. 주권의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 그리고 형식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차원의 주권은 각기 서로 다른 분석을 필요로 하며, 한 국제정치학자는 근대적 주권의 의미를 국내적(domestic) 주권,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주권, 국제법적(international legal) 주권, 웨스트팔리아적(Westphalian) 주권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 서구의 주권 개념은 라틴어의 전치사 super(--위의)와 형용사인 superus(--의 위에 있는)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존엄성(majestas)과 그에 의한 지배(imperium), 그리고 그 권위의 소재로서의 인민(populus)이라는 세 요인으로 이루어졌다.³

하지만 통상 절대적이고 자율적인 권위로 표현되는 주권은 사실상 극히 상대적이며 제한적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주권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묘사되나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침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존재는 하나 구속력은 약한 ‘조직적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는 것이다.⁴ 이에 반해 주권(국가)을 그 본질은 유지된 채 속성이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환론의 입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하지만 양자는 공히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서의 주권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젤렉(Koselleck)에 의해 발전되어온 개념사의 방법론은 이와 같은 논의에 있어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코젤렉은 말과 실재, 즉 개념과 현실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양자를 연구하는 개념사와 사회사의 두 방향 연구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사는 사회사에 대해 보조적, 병렬적, 독립적인 역할을 모두 갖는 것으로, 이는 사회사와 단순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갖고 있다.⁶ 즉 우리는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체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등장했던 사유와 제도의 정치적, 사회적 변형의 모습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권에 대한 개념사적 이해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최근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유행하는 관념주의(ideationalism)와 물질주의(materialism) 사이의 논쟁도 유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즉 다양한 비물질적인 변수를 망라하는 관념(idea)의 영역을 권력과 이익의 세계로 묘사되는 국제 정치의 장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결정요인(determinant)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했던 것이다.⁷ 이익이 관념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와 의도적인 행위자가 관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전제 사이의 대립은 양자의 중간지대(middle ground)의 모색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⁸ 이를 위해서는 관념이 제도(institution)의 변수로 연결되는 부분과 이념(ideology)으로 체계화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주권, 근대국가, 민족주의의 연계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나 관념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학문적 고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용희 교수가 제시하는 ‘권역’과 ‘전파’의 이론은 이를 위한 적절한 사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⁹ 그에 따르면 정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정치’로 관념하는 특정한 시기와 장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정한 정치행위의 의미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권역을 국제정치권이라고 지칭하며, 그 형성은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매개로

하여 특정한 관념이나 제도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사례는 전파를 통한 새로운 권역 형성의 모습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의 조선에 근대적 주권의 개념/관념이 도입/수용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주권이 도입되고 사용되는 예를 살펴본 후, 그러한 개념이 실제적인 정치적 변화의 양상과 접합되는 측면을 알아보고, 전통적인 국권 개념의 용례와의 비교를 행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김윤식, 유길준, 윤치호의 저작을 바탕으로 서구근대질서의 표상으로서의 주권 관념이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수용, 변용되는 방식을 저항, 구성, 순응이라는 세 유형의 구분을 통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개념의 도입과 사용

1) 만국공법과 개화파들의 용례

개념으로서의 주권의 조선 도입은 서구의 국제법, 즉 ‘만국공법’이 번역, 전래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선교사 마틴(W.A.P. Martin)은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 of International Law* (1836)를 1864년 한역하면서 sovereignty를 주권이라고 조어 번역하였다.¹⁰ 만국공법이 실제로 조선에 전래된 시기는 1864년에서 1876년 사이에 청에 조공사절로 왕래하던 인물들이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는 1876년 음력 1월 20일 고종실록에 실린 신현의 보고문에서 처음 등장하며, 전래된 사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1877년 일본의 대리공사 花房義質이 예조판서 조영하에게 기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¹

만국공법에서는 주권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治國之上權)으로 정의하고 대내적 차원(在內之主權)과 대외적 차원(在外之主權)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내적 차원의 주권은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내의 일을 ‘자주’

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적 차원의 주권은 타국의 명에 따르지 않고 ‘자주’로 각국이 전쟁과 평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였다. 1874년 당시 동래부 훈도였던 안동준의 상소에서 “今之各國通商은 世界之公法이니”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당시 공법적인 지식과 이에 따른 국가주권에 의한 외교통상의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하지만 조선에서의 만국공법은 그 도입 과정이 청과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번역된 문헌에 의존함에 의해 독자적인 번역과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수입되지 못하였고, 개화파와 척사파, 그리고 개화파 중에서도 청국적인 국제법관과 일본적인 국제법관을 지지하는 두 개의 유파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법 적용의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萬國交際之道’라는 자연법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험적인 관념보다는 규범적인 관념의 형태로 수입되었다는 한계를 지닌 측면도 있었다.¹³

주권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관보로 발간되었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나타나는데, 주권이라는 개념이 직접 쓰인 것은 대내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순보 제11호는 중국공보를 거론하면서 “상고하건대, 서양 각국에서 행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초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독립과 평등의 관념 또한 등장하는데, 주보 제6호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이 두 주는 거의 다 유럽 각국에 병탄되어 이른바 독립국이라는 것이 없다. … 간혹 태국, 페르시아 등등의 나라가 지금까지 독립을 보전하고 있지만 … 유독 스스로 지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뿐인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독립 자강하여 영원히 걱정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 하며, 순보 제13호는

우리나라는 아주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만약 상하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외무에 부지런하면 천하 국가들과 병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¹⁴

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대외적 주권의 위협 상황과 그 보전의 방책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 있어 주권 개념의 도입과 사용은 청을 중심으로 한 사대와 조공의 전통질서에서 조약과 국제법의 서구근대질서로의 이전을 의미하였고, 이는 ‘세계관의 충돌’의 형태를 띠었다.¹⁵ 새로운 관념의 전파와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개화파들은 이를 보다 실천적인 견지에서 나라의 자강의 필요성과 함께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은

자래로 청국이 스스로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가 진작의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기반(羈絆)을 철폐하고 獨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불가불 자수자강해야 한다.¹⁶

라고 강조하였다. 박영효도 “법이 혹독한 까닭에 나라의 주권을 외국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 외국과 교류할 때, 주권을 잃거나 국체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주권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비록 만국의 공법과 세력균형, 공의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 自立自存할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을 초래하게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 공법공의는 본시 믿을 것이 못됩니다.

라고 지적하여 현실주의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¹⁷

2) 강화도 조약에서 대한제국까지

조선에게 있어 주권개념의 도입은 단순한 단어의 전래가 아닌 새로운 대외관계의 규범과 규칙의 전파를 뜻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일본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약) 제1조에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이라고 표기하여 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명시하였다. 이는 당시 기존의 ‘政教自主’ 원칙으로부터 종주권에 대한 강조로 대 조선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던 청을 견제하고 자신의 세력

확대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1877년 청에 대한 보고에서 “小邦이 上國에 服事하고 있는 것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병자조약에서 소방을 自主國이라고 한 제1조는 일본이 임의로 자서하여 강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종속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국을 통해 서양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조선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더욱 본격화된 청의 조선에 대한 통제와 일본의 조선을 통한 대륙 진출의 모색 사이의 갈등은 청일전쟁을 통한 무력적 충돌에 의해서만 정리 되어질 수 있었다. 청이 “상국의 체면 상 속방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명분 아래서 파병을 하자 일본은 청에게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회답을 보내고, 조선 정부에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였다.¹⁸ 조선은 아래와 같은 답신을 보내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병자수호조규 제1관(강화도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일절이 있다. 본국은 입약한 이래 양국의 교제, 교섭 사건에서 자주, 평등의 권리로 판리했다. 이번에 중국에 청원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의 권리에 의한 것일 뿐 조일조약에 위배된 적이 없다. 본국은 조일조약에서 정립된 것을 준수했다. 또한 본국이 내치, 외교에서 자주국이라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는 바이다.¹⁹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상황은 청일전쟁의 결과 청이 패퇴하면서 종결되었다.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를 통해 일본 측의 요구대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하고, 조선 정부에 요구해 오던 조공의례를 모두 철폐한다고 선언하였다. 일부 개화파들은 이러한 사태의 전개를 조선이 형식적인 주권을 갖게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독립신문의 1896년의 사설은 “일본이 두 해 전에 청국과 싸워 이긴 후에 조선이 분명한 독립국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²⁰ “하나님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과 청국이 싸우게 된 까닭에 조선이 독립국이 되야 지금은 조선 대 군주폐하께서 세계 각국 제왕들과 동등이 되시고 그런 까닭에 조선 인민들도 세계 각국 인민들과 동등이 되었는지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²¹ 또 다른 사설은 “세계에서 가장 천한 청국에 소국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과 동등이 되어 각국에서들 이왕에는 영사만 보내더니

지금은 전권공사와 대리공사들을 보내고, 각국 정부에서 조선정부 대접하기를 자주 독립한 정부로 대접하고 … 공문 상에도 대조선국이라 하니 …”라고 쓰면서 다른 나라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피력하였다.²²

이와 같은 자주독립에 대한 기대는 이후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좀 더 구체화된 모습을 띠게 된다. 1896년 조선은 독자적인 연호인 건양을 채택하였고, 이어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에 올라 연호를 다시 광무라고 칭하였다.²³ 그 해의 『독립신문』은 “조선이 세계만국이 오늘날 독립국으로 승인하여 주어 조선 사람이 어떤 나라에게 조선을 차지하라고 빌지만 아니하면 차지할 나라 없을지라 … 만약 어떤 나라가 조선을 침범코자 하여도 조선 정부에서 세상에 행세만 잘하였을 것 같으면 조선을 다시 남의 속국되게 가만 둘 리가 없는지라”라고 말하면서 국제법적 주권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²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형식적 주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글도 등장하였다.

나라가 독립이 되고 아니 되고는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에게 달렸다. … 나라를 보존하는 힘이 조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타국을 믿고 있으며 조선이 자주 독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총 한 방 놓지 않았다. 자주 독립하겠다고 원한 일도 없건마는 남(일본)이 시켜주어 오늘날 조선이 말로는 세계 각국과 동등이라 하나 실상을 볼 것 같으면 조선이 어찌 독립국이리요. 남이 억지로 시켜준 독립인 까닭에 말로만 자주 독립이요, 실상인즉 이왕에 청국에 매여 있을 때 보다 더 외국 의 지휘를 들으니 … 남이 벌어서 준 자주 독립을 잃지나 말고 지키기나 하여야 할 것이다.²⁵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왕권의 유지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민권의 중요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함께 표출되었다.

나라가 나라 됨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스스로 서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힘입으려 아니함이요, 둘째가 스스로 닦아 정사와 법을 온 나라에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대 황제 폐하에게 주신

큰 權이라 이 權이 없은즉 그 나라도 없다. … 스스로 서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재물 정사는 마땅히 남에게 사양치 않을 것이거늘 늘 남에게 사양하여 왔고 군사의 권은 마땅히 스스로 잡을 것이로되 남이 잡게 하여왔다. 스스로 닦는 것으로 말하자면 나라라고 칭함은 그 전장과 법도가 있음이라. 지금 우리에게 전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옛 법은 폐지되었고 새 법은 비록 정해져 있으나 아직 행해지지 아니한즉 이것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²⁶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 … 사람이 토지를 의지하여 나라를 세울 때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동심 협력하여 나라를 세웠다. … 백성의 권리로 나라가 된다고 하나 삼천년 이래로 전국 권리를 정부가 주장함으로써 백성은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동양 풍속이 나라를 정부가 독점하는 고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백성은 권리가 없음으로 나라의 흥망을 전부 정부에게 미루고 수수방관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 힘이 미약하여 나라가 망하는 폐단이 자주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 망하는 형상을 보면 종묘사직을 바꾸고 임금을 바꾸고 나라 이름을 고칠 뿐이고 정부와 백성은 그대로 두는 고로 그 정부 자손이 새 나라에서 도로 벼슬하고 백성들도 그 새 나라에서 도로 세금을 내는 고로 나라 망하는데 관심이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 해외 강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데 종묘사직과 임금과 나라 이름은 그대로 두고 사람의 권리와 토지의 이익과 소출만 가져가고 또 총명 강대한 백성을 옮겨다가 두고 주장을 한다. 이려고 보면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고 토지는 이익과 소출이 없어지면 정부와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 노릇을 하며 무엇을 하여 생명을 보존하리요. 그런즉 지금 구하는 방략은 창졸간에 백성의 권리를 모두 주어 나라 일을 하게 할 것도 아니요,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높아진 후에야 대한이 억만년 무강하다고 나는 생각한다.²⁷

결국 당시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형식적인 주권은 갖추었을지라도 그를 지탱할 실력은 아직 미비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주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권 개념과의 비교

조선의 이전 용례에 보면 ‘自主’라는 용어가 서구의 ‘자유’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산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으로서의 自主之權을 논하였고,²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자유의 개념을 이야기 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어 번역어인 주권 개념과 가장 유사한 뜻으로 쓰인 기존 단어는 ‘국권’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885년의 거문도 사건에 관한 김윤식과 타국의 외교관들 사이의 서한 속에서 그러한 용례가 등장하고 있다.

거문도에 대한 문제는 귀국의 國權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영국 대신의 비밀편지를 보았는데 단지 만약의 경우에 대응하게 한 것이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하건대 영국이 방비하겠다고 말한 나라가 가령 귀국과 우호 조약을 체결한 나라라면 관계되는 바가 더욱 크지 않겠습니까.²⁹

귀 공사는 영국의 행위를 과연 어떻게 봅니까. 비록 작은 섬이기는 하지만 관계되는 점이 중대하므로 경솔히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맹관계가 있는 각국들에서 반드시 공평한 논의가 있을 것이니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고 공정한 의리에 의거하여 國權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⁰

조선이 국제법적인 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의 사례에서도 이를 국권의 상실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두 제국 사이에 새로 체결된 조약이 비록 추후도 황실의 존엄과 내정의 자주에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國權을 잃고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말하면 자못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³¹

폐하를 모신 자리에서 오늘날의 나라 형세는 구천이 온 나라를 섬기던 때보다 오히려 더한 것이 있으니 임금과 신하 상하 모두가 분발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속히 國權을 널리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지 하루라도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를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고 물러나왔습니다.³²

한일합방 이후의 『매일신보』 기사는 “통감부에서 신문 제호 중 한국의 國權을 상징하는 명칭은 고치게 하여 대한신문은 한양신문으로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황성신문은 한성신문으로 대한민보는 민보로 대동공보는 대동신보로 각각 제호를 고치다”라고 쓰고 있어,³³ 국권이 오늘날의 대외적 주

권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관념의 수용과 변용

전술한 것과 같이 주권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대정치를 표상하는 관념이자 당시의 문명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게 있어 주권 개념의 도입은 곧 포괄적인 관념의 수용 문제에 해당하였고, 이는 유교와 기독교, 그리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정치질서와 근대적인 서구 정치질서 사이의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대외적으로는 사대질서와 공법질서 간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에 대한 종주권 체제와 서구와 일본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간 체제 사이의 택일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갖게 되는 관념은 그를 통해 한 사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의 상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³⁴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 있어서 주권 관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질서관의 수용은 그 대응에 있어 저항과 구성, 그리고 순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³⁵ 서구를 야만으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인 책사의 태도를 취한 쪽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세에 편승하려 했던 세력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관료나 지식인들은 이전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 그리고 주어진 현실과 명분체계 사이에서 각기 다른 고민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김윤식, 유길준, 윤치호의 논지를 통해 이러한 주권 관념의 상이한 수용과 변용의 양식이 갖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1) 김윤식: 저항의 한계

대표적인 개명 유학자였던 김윤식은 기본적으로 전통질서의 범주에서 근대를 수용하려 하였으며, 이는 그의 동도서기론을 통한 소극적인 개국논리에서 잘 나타난다.³⁶ 이러한 입장의 대외적인 측면은 중국과의 사대관계의 틀 내에서 미국 및 다른 국가와의 공법적 관계의 수립 가능성을 모색한 그

의 양득/양편론으로 표현되었다. 김윤식은 자주와 독립, 속방과 속국을 구별하여, 자주는 가하되 독립은 불가하며, 조선은 속방이나 속국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게 있어 속방은 전통적 사대질서에 있어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국가이긴 하지만 政教內治에 있어 자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였다. 그에 비해 속국은 근대적 의미의 보호국을 뜻하는 것으로 김윤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이 속방임을 명시하는 것이 자주권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라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각국에 성명하고 조약에 대서해 놓으면 후일 (중국은) 우리나라 유사시 힘써 도와주지 않으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각국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담입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가법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자주권의 보유를 기재해 두면 각국과 외교하는데 무해하여 평등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권 상실의 걱정도 없고, 사대의 의에도 배반되지 않으니, 가히 兩得이라고 하겠습니까.³⁷

또한 김윤식은 이홍장이 속방 조항에 관한 의견을 묻자, “중국에 대해서는 속국이나 각국에 대해서는 자주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에 맞아 실제와 이치에 모두 兩便하니 매우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³⁸

김윤식의 이러한 입장은 전통과 근대의 이중적 국제질서의 구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권력정치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義理와 信의 문제였다. 김윤식의 의리는 “中庸이라고 할 때의 中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중화론자들이나 위정척사파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공법에 대한 신은 자강에 한계가 있는 조선이 택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그의 親淸 사대노선에 기반한 상대적인 저항의 노선은 이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그 한계는 그 자신이 의리의 소재를 청에서 일본으로 변화시키게 된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³⁹ 유학자인 김윤식에게 균제는 합종연횡의 다른 표현이었고, 공법은 의리와 신의 또 다른 형태였다. 하지만 전환기에 있어 속방의 인정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주권을 창출하거나 전통적 의미의 국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2) 유길준: 구성의 좌절

김윤식에 비교해 볼 때 유길준은 기본적으로 근대의 범주에서 전통질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당시 조선이 처한 이중적 세계질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兩截의 용어로 묘사하였다.

수공국이 연즉 제국을 향하여 동등의 예도를 행하고 증공국을 대하여 독존한 체도를 천하리니 차는 증공국의 체제가 수공국반 제타국을 향하여 전후의 양절이오 수공국의 체제도 증공국반 제타국을 대하여 역 전후의 양절이라 수공국 급 증공국의 양절체제를 일시함은 하고오 형세의 강약은 불고하고 권리의 유무를 지관하느니 강국의 망존은 자재하고 약국의 수모는 공법의 보호가 시존한지라 연한 고로 역시불일한 편체는 공법의 불행으로 약자의 자보하는 도니 강자의 자행하는 기습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공법의 일조도 불설함이라.⁴⁰

그는 자신이 처한 형세에서 강대국의 침략을 면하기 위해서 본심에 맞지 않는 조공을 행하는 증공국과 자주할 권리가 전혀 없는 속국을 구별하고, 증공국은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조약을 맺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약소국의 자주권(주권)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서유견문의 방국의 권리 부분에서 만국공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고금의 여러 공법 대가들은 어떠한 나라나 국민이든지 관계치 않고, 그 나라를 자주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을 경우, 그 나라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서, 주권이라 하는 것은 한 나라를 관제하는 최대의 권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러 관계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외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참다운 독립국인 것이다.⁴¹

방국의 교제도 역시 공법으로 조제하여 천지의 무편한 정리로 일시하는 도를 행한즉 대국도 일국이오 소국도 일국이라 국상에 국이 경무하고 국하에 국이 역무하여 일국이 국되는 권리는 파차의 동연한 지위로 분호의 차수가 불생한지라.⁴²

라고 말하고, 김윤식과는 달리 자주, 독립, 평등을 결합시킨 대외적 주권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을 공법상의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유길준의 또 하나의 노력은 그의 중립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 나라가 약소하여 자력으로 중립의 정책을 지킬 수 없으면, 이웃나라들이 서로 협의하여 행하기도 함으로써 자국 보호의 방책으로 삼기도 하니, 이는 부득이한 형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법이 허용하고 있는 바다.⁴³

라고 지적하면서, 형식적 주권의 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신의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유길준은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청의 조선에 대한 속국 주장을 반박하고 조선의 독립적 지위를 관철하려 하였다. 이는 전통적 질서의 불가피한 유산을 수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질서로의 이행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었으며, 권력정치적 요인에 대한 이해 아래서 규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있어서도 인민주권과 민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군민공치론을 피력하면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⁴⁴

하지만 유길준의 이러한 구성의 시도는 19세기 말의 상황 전개에 따라 난관에 봉착하였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일본에 대한 편승으로 기울게 되었다. 물론 이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국내적인 역량 부족의 문제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뒤에 서술되는 윤치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내적 비관론에 치우친 대외적 종속의 합리화라는 측면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19세기 말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병자년(丙子年) 조약은 (일본이) 우리와 좋게 지내면서 우리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꿈을 꾸듯이 혼미하였고 갑신년(甲申年)의 일은 우리의 사변과 관련하여 우리를 독립으로 격려한 것인데도 우리는 서로 흘려보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갑오년(甲午年)의 일청 전쟁으로 말하면 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안팎으로 변란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체로 지켜내지 못할까봐 걱정하여 분연히 의리를 내세워 군사를 대신 일으켜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보장하려 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조신들은 서로 틀려서 단합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⁴⁵

그 결과 을사보호조약은 아래와 같이 이유가 주어지게 되었다.

저 나라(일본)는 수수방관하면서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멸쳐 일어날 것을 기다릴 수 없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무모한 외교가 또 어떤 화근을 일으켜 저 나라까지 끌어다가 헤아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광무(光武) 9년 11월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넘겨받았습니다.⁴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미화되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한때에 남의 힘을 받아 움직인 데 불과했으므로 그 움직임이 그치자 우리의 독립도 절반의 면모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마땅히 먼저 그 실력을 준비하여 세계 만국에 보여야 하고 일본 한 나라만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라에서도 언제 우리가 정식으로 독립되는 것을 원치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 나라에서는 인정하였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고 저 나라에서는 격려하였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나라에서는 끝내 추세워 주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主權의 권한을 남에게 주고 칼을 거꾸로 잡았으므로 저 나라에서는 단연코 그만둘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우리와 오늘과 같은 협약을 맺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독립을 보호한 것이고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을 도와준 것이고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⁴⁷

유길준은 “나라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정벌한 다음에야 남이 정벌하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야 남이 업신여기는 법”이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현실수용과 장기적인 자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종묘사직의 큰 계책으로 말하면 그것은 원래 망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자기를 아는 식견을 가지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쓸데없는 의심을 품어 저들에게 환심을 잃거나 저들의 분노를 사지 말고 성심성의로 신뢰하면서 서로 도와 착한 일을 하고 의종게 지내면서 유익한 일을 함께 하여 밤낮없이 부강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⁴⁸

결과적으로 주권 획득을 향한 유길준의 구성의 모색은 국제정세와 내부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말았고, 이는 국제사회와 식민주의라는 근대국제 질서의 양면성과 힘의 불균등 상태에서의 규범의 역할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3) 윤치호: 순응의 결과

윤치호는 유길준 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전통으로부터의 탈피와 근대로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청과 조선의 전제정치로 대표되는 전통질서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윤치호는 청을 蠻夷의 손 혹은 豚尾라고 부르면서, 아래와 같이 청으로부터의 자주와 독립을 공지의 사실로 천명한다.

우리가 내치외교를 自主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로 청국에서 일찍이 허락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치를 가지고 따진다면 청국을 어찌 두렵다고 하겠는가.⁴⁹

우리나라가 美英 諸國과 조약 맺은 날부터 곧 독립국이 된 것이다. 세상에 어찌 속국과 더불어 평등한 조약을 맺을 이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나라 강하게 하는데 주의함이 옳은 것이다.⁵⁰

유교를 사대적인 종속윤리이자 압제적인 계서체계의 원리로 간주하였던 윤치호는 억압과 부패가 만연한 조선조에서 개혁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있어 독립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별국가의 유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대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국가로의 독립인가”라는 점이 마찬가지로 중요하였다. 따라서 밖으로는 국권을 유지하고 안으로는 문명화된 국가를 건설하려 하는 이른바 ‘개화독립론’이 윤치호 사상의 요체를 이루었다.⁵¹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인 민권을 강조하였지만, 당시의 조선 인민들에 대해서는 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윤치호는 근대국가의 주체를 당시의 인민들이 아니라 미래의 ‘개화국민’으로 상징하고 교육계몽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국민국가로의 독립론’과 ‘전제국가로의 독립무용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고, 기독교적이고 사회진화론적인 그의 문명관은 대외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쉽사리 ‘문명국 지배 하의 개혁론’으로 연결되었다.⁵²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화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일본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에 반해, 윤치호는 대세에 따라 ‘선문명화, 후독립’의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다.⁵³ 다시 말해서 윤치호는 근대적 주권 관념을 가장 충실하게 수용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국권의 상실은 그에게 절대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일본과의 합방 이후에 지속되었다. 윤치호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지만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⁵⁴ 그는 “우리가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이상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⁵⁵ “조선인이 필요 이상으로 일본인을 적대시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하고, 물 수 있을 때까지는 짓지도 말라는 냉철한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⁵⁶ 결국 윤치호는 ‘자치’를 통해 조선의 내적인 힘을 기르고 궁극적인 ‘독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가능성은 전적으로 일본의 의도에 달린 것이었다. 청일전쟁을 야만과 문명 사이의 전쟁으로 보았던 그의 인식과 서양에 대한 윤치호의 동경심과 열등감의 결합은 이후 일본의 인종주의적 기치에 대한 지지로 발전하였다. 윤치호는 한편으로 개별국가를 넘어서는 문명과 인종의 범주를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대외적 주권의 획득과 유지라는 당시의 절박한 목표와는 오히려 상충되는 것이었다.

크래스너(Krasner)는 19세기 동아시아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조선의 사례를 규범과 국내정치적 동기가 우세하게 되면서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 즉 명분이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 즉 실리를 압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⁷ 하지만 김윤식, 유길준, 윤치호의 저작에서는 모두 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 요인과 국제정치적 목표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세 사람의 차이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저항, 구성,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당시 상황의 시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방식은 각기

상이하였지만 열강 사이에서 국권을 보존하면서 근대국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였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시간과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조선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4. 결론과 현대적 의미

주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개념 혹은 관념으로서의 근대적 주권이 실제적인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개념이나 관념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명분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19세기 조선은 개국 이후 새로운 질서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대외적이고 형식적인 주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이에 관련된 대내적이고 실질적인 주권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강화도 조약, 청일전쟁, 대한제국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개념의 사용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관념의 수용 문제에 있어 당시의 지식인들은 주어진 체계와 새로운 체계 사이에서 동시대에 있어, 혹은 시기적인 변화를 따라 다양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규범이나 국내정치적 고려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권력정치와 국제정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 대내외적인 역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21세기에 있어 우리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문명표준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 한 외세의 활용과 국내역량 강화, 그리고 제도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⁵⁹ 19세기 말의 국제정치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주권의 개념을 전파하였다면, 21세기 초의 세계정치에 있어서의 주권의 절대성은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는 파마콘(pharmacion)적인 대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새롭게 도래하는 질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저항이나 순응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구성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주권에 대한 탄력적인 인식과 다양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즉 단일영토국가와 웨스트팔리안적 주권을 넘어서는 ‘다변화된 이차적 상징(second image

diversified)’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재편이나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註)

- 1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세계정치』, 25-1(2004)의 “주권과 국제관계” 특집을 참조할 것.
- 2 Krasner에 의하면 국내적 주권은 한 국가 내의 공적 권위의 조직과 그에 의한 효율적 통제를, 상호의존적 주권은 국경을 통과하는 흐름을 통제하는 공적 권위의 능력을, 국제법적 주권은 국가나 다른 개체 사이의 상호인정을, 그리고 웨스트팔리아적 주권은 국내적 권위의 구성에 있어 외부적 행위자의 배제를 각각 지칭한다. S.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 9.
- 3 N. Onuf, “Sovereignty: Outline of a Conceptual History,” *Alternatives*, 16 (1991).
- 4 Krasner, 1999, ch. 1.
- 5 S. Smith, “Globalization and the Governance of Space: A Critique of Krasner on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2001).
- 6 R. Koselleck,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The MIT Press, 1985), part II.
- 7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A.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h. 1을 볼 것.
- 8 J. Hall, “Ideas and Social Science” in J. Goldstein and R. Keohane, eds., *Ideas and Foreign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9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64), 제2장.
- 10 휘튼은 서양법 언어를 번역하면서 중국에 있는 용어를 빌려 사용하거나 기존 용어가 없을 때는 중국학자들과 상의해서 조어하였는데 주권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서울: 박영사, 1982), p. 290.
- 11 장형원, “19세기 조선의 주권 개념 수용과 형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논문집, 『19세기 조선의 근대 국제정치개념 도입사』, 1995, p. 58.
- 12 김봉진, “조선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p. 33.
- 13 장형원, p. 59.
- 14 이상의 한성순보/주보의 내용은 장형원, pp. 68-70에서 재인용.

- 15 김용구 교수는 이를 동양의 예와 서양의 공법 사이의 충돌로 묘사하면서, 강화도 조약으로 가시화된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사이의 이 대립은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 전교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더 이상 중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이 아니라 열강이 병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고 말한다.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서울: 나남출판, 1997), 제4장.
- 16 “조선개혁의견서,” 『김옥균전집』(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pp. 110-111.
- 17 박영효, “내정개혁에 대한 상소문.”
- 18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p. 226-227.
- 19 『구한국의교문서-日案』 2, pp. 656-657, 정용화, 2004, p. 228에서 재인용.
- 20 『독립신문』, 1896년 4월 18일.
- 21 『독립신문』, 1896년 6월 20일.
- 22 『독립신문』, 1896년 9월 12일.
- 23 이 과정에서 1880년에 번역된 『공법회통』이 청제상소에 활용되었다.
- 24 『독립신문』, 1897년 5월 25일.
- 25 『독립신문』, 1897년 7월 27일.
- 26 『독립신문』, 1898년 2월 24일.
- 27 『독립신문』, 1898년 12월 15일.
- 28 김한식, 『실학의 정치사상』(서울: 일지사, 1979), p. 343.
- 29 일본 대리공사의 김윤식에 대한 회답편지(고종 22/03/29), 『CD-ROM 고종순종실록』(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8).
- 30 김윤식의 중국 총판과 각국 공사들에 대한 편지(고종 22/04/07), 『CD-ROM 고종순종실록』.
- 31 권중현의 상소(고종 42/11/18), 『CD-ROM 고종순종실록』.
- 32 이용태의 상소(고종 42/11/26), 『CD-ROM 고종순종실록』.
- 33 『매일신보』, 1910년 8월 31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34 Hall, 1993.
- 35 여기서 “구성”이란 저항의 입장과 순응의 입장 사이에서 양자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려는 복합적인 대응 방식을 지칭한다.
- 36 장인성 교수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개국 논리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보편적 도의 수용을 위한 적극적 선택, 도덕적 선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 선택, 그리고 자주독립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선택인데, 이중 김윤식은 세 번째의 논리를 택하였다. 그에게 있어 서양의 敎는 邪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 器는 이용후생의 利인 까닭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제7장.
- 37 『陰晴史』, pp. 57-58. 김윤식은 중국의 옛 조공국이었던 베트남, 비안마, 유구가 모두 공법체제에 편입되면서 주권을 상실한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정용화, “전환기 자주외교의 개념과 조건: 19세기말 조선의 대청외교의 이론적 고찰.”

- 『국제정치논총』, 43-2 (2003), pp. 206-207.
- 38 『陰晴史』, pp. 52-53.
- 39 김성배, “김윤식의 정치사상 연구: 19세기 조선의 유교와 근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제4장.
- 40 『유길준 전서 I: 서유견문』(서울: 일조각, 1971), p. 117.
- 41 『유길준 전서 I: 서유견문』, pp. 89-90.
- 42 『유길준 전서 I: 서유견문』, p. 108.
- 43 『유길준 전서 IV: 정치경제편』(서울: 일조각, 1971), p. 326. 이는 청이 주도하여 조선을 중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외교를 담당하였던 김윤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44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정용화, 2004, 제3부를 참조할 것.
- 45 벼슬을 사양하는 유길준의 글(순종 00/10/23), 『CD-ROM 고종순종실록』.
- 46 벼슬을 사양하는 유길준의 글.
- 47 벼슬을 사양하는 유길준의 글.
- 48 벼슬을 사양하는 유길준의 글.
- 49 김봉진, 1985에서 재인용.
- 50 『윤치호 일기』, 1884년 11월 19일.
- 51 유영열, “개화기 윤치호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제2편.
- 52 『윤치호 일기』, 1894년 9월 28일.
- 53 정용화, 2004, 보론을 볼 것.
- 54 윤치호는 일본의 부도덕성과 조선인의 저열한 민족성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민족성 개조를 위한 비정치적 성격의 실력양성론을 고수하였다. 김상태,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165 (2000).
- 55 『윤치호 일기』, 1919년 1월 29일.
- 56 『윤치호 일기』, 1920년 11월 14일.
- 57 S. Krasner,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2001). 결과의 논리는 모든 정치적 행동을 합리적인 계산으로 간주하는 반면, 적합성의 논리는 그를 규칙과 역할, 그리고 정체성의 산물로 이해하는 차이를 갖는다.
- 58 이와 같은 점에서 조선의 사례는 서론에서 논의된 ‘조직적 위선론’과 ‘전환론’ 중 후자의 논의에 가깝다고 하겠다. 즉 나라의 권리라는 본질은 계속 존재하면서 그 시대적인 전환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59 하영선 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서울: 풀빛, 2004)를 참조할 것.

〈Abstrac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Modern Korea

Wookhee Sh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oncept of “sovereignty” was diffused and accommodated in early-modern Korea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cases in which the word “sovereignty” was introduced and use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ceptual and substantial aspects of it, and compare it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right.” In the second part, three figures, Kim Yun-sik, Yu Kil-chun, Yun Chi-ho a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differing acceptance patterns (resistance, construction, compliance) of the sovereignty idea in early-modern Korea.